

1-1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농식품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박홍식 사무관 박천복	044-201-2344
소속기관/단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실	실장 양종열 팀장 이택선	044-861-8761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임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 달성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생산성 향상	20%	'22.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4,000	96,000	67,200	78,400
국 고	24,000	36,000	25,200	29,400
용 자	40,000	60,000	42,000	49,000

II.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아래 표의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아래 표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축종		필요 장비
양돈	번식/일괄	포유모돈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비육전문	사료자동급이기(사료빈관리기로 대체 가능),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양계	육계	환경관리기, CCTV,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산란계	난선별기, 환경관리기, 사료빈관리기
낙농		착유기, 발정탐지기, 환경관리기
한우	번식/일괄	발정탐지기,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비육전문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정함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1.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 '21.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9~'21년)
- '19.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용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용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착공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 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 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 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